

보도시점 (지 면) 4.22.(월) 조간
(인터넷) 4.21.(일) 12:00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 전국 18개 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총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 조정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유승남, 이하 '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하여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법원연계형 조정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 **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15~'24.4) : 법원연계형 75%, 법원연계형 외 접수 46.7%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체결 완료의 소회를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책임자	과 장	정강은 (044-204-7780)
		담당자	주무관	김윤정 (044-204-768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1**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협약 현황**

□ **(협약주체)**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18개 전국 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 **(체결현황)**

연번	협약기관(협약체결(년월))	연번	협약기관(협약체결(년월))
1	서울중앙지방법원('15.10)	11	수원지방법원('23.3)
2	서울서부지방법원('15.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23.4)
3	서울남부지방법원('16.10)	13	창원지방법원('23.7)
4	서울동부지방법원('16.11)	14	춘천지방법원('23.11)
5	특허법원('22.10)	15	전주지방법원('24.1)
6	대전지방법원('22.11)	16	인천지방법원('24.1)
7	대구지방법원('23.2)	17	제주지방법원('24.2)
8	부산지방법원('23.2)	18	청주지방법원('24.4)
9	울산지방법원('23.2)	19	광주지방법원('24.4)
10	의정부지방법원('23.3)		

□ **(주요내용)** 위원회와 지방법원 간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과 양 기관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

- 법원은 계속 중인 사건 중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분쟁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 위원회는 배정받은 조정사건을 신속·성실히 처리
- 법원과 위원회는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세미나 개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에 협력, 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

※ 세부 협약내용은 개별 협약 기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함

□ 개요

- (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하여 당사자의 신속·원만한 해결 지원

* 위원회 구성 : 50명(직능 및 기술위원 50명)

- (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제5장 분쟁조정 및 중재(제23~28조)

□ 신청방법

- (접수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회 운영 지원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신청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지원내용**① 중소기업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피해기업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을 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진행

- (조정)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

- (중재)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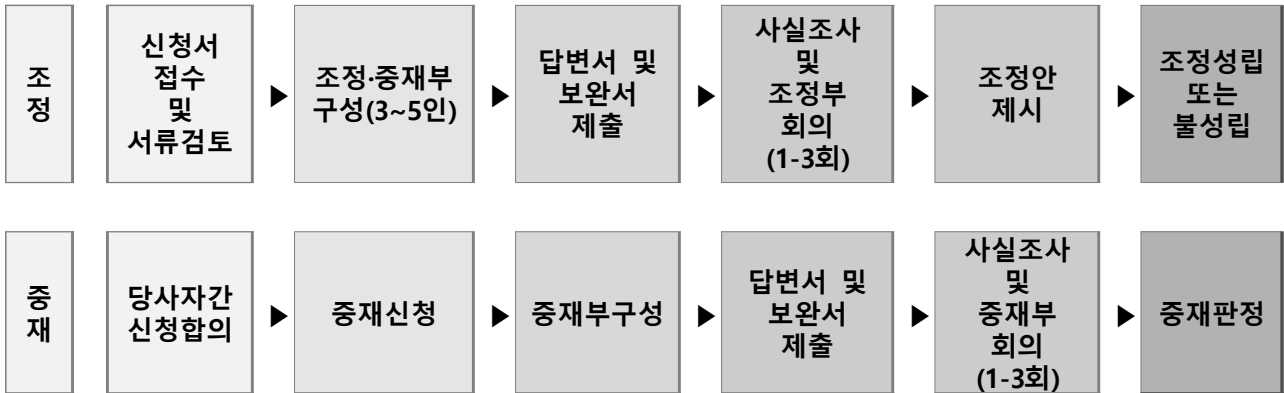
*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과 별도의 중재합의가 필요하며,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소송불가)

< 민사제도와 조정·중재제도 비교 >

구분	소송	조정	중재*
신청방식	일방적 소송 제기 가능	일방적 조정 신청 가능	중재합의 후 신청 가능
법률대리인	변호사 선임 필요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소요비용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등 * 수천만원 ~ 수억원	수수료* 외 비용지원 * 11,000원 ~ 55,000원	수수료* 외 비용지원 * 22,000원 ~ 수백만원
해결방식	법원의 판사 판결	조정부의 조정안 제시	중재부의 판정
심급방식	3심제(1~3심)	단심제	단심제
소요기간	가변적인 해결기간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

- (지원절차)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 조정·중재 절차 >



- ② (비용지원)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비용지원 제도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 비용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최대 5,000만원